# 심 사 보 고 서

## 【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 273

2023. 10. 23. 도시교통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0. 11. / 김상수 의원 등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0. 11.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 가. 제안이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삭제하고, 관리지역에 연접한 사업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7조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함.(안 제22조, 제28조, 제29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○ 본 개정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(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)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, 관리지역 내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고.

○ 법 제49조의2제3항과 5항 규정에 의거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O 회의록 참고

#### 5. 토론요지

O 없 음

#### 6. 심사결과

O 「원안가결」

## 7. 소수의견 요지

O 없 음

붙임: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